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2010년 12월 pp.123~151
한국세무학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이행에 대한 연구*

정태범**

— <요 약> —

재무제표의 제1차적 작성책임은 기업에 있다. 여기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절차에 있어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영업실적 예측치의 공시, 내부감사의 감사업무 수행, 외부감사 수행, 주주총회 개최 등의 대표적 사건이 적절히 시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사의 내부감사는 그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상법상의 규정은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일이 외부감사 시작일보다 늦은 경우가 74.4%에 달하였으며, 이는 외부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이 외관상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시성이 중요한 영업실적 공시 역시 70.2%의 기업은 외부감사일보다 늦게 영업실적 공시가 이루어짐을 관찰하였다. 아직도 기업 내부의 회계인력으로 충분히 재무제표 결산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감사가 이루어져야만 회계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현실은 향후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회계전문인력의 확충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다.

회계투명성의 달성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존 제도의 운영에 있어 최선의 관심과 적절한 감독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현행의 외부감사보고서 전자공시와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의 상호 절충이 필요할 것이며 이사회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주제어> 재무제표작성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공시, 이사회, 내부감사

* 이 논문은 2009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tbjeong@sm.ac.kr, 02-2077-7468

I. 서 론

회계감사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여 외부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부가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경영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회계감사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경영자와 회계감사인인 책임 구분의 기준을 제공한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경영자는 재무제표에서의 부정, 오류에 대한 예방이나 적발을 위해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반해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대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고 경영자에 대한 질문 또는 내부감시기구와의 토의 등과 같은 보고책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외부의 독립적 제3자에 의한 인증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절차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단계는 회계정보를 최초로 창출하는 단계로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SK글로벌 등의 분식회계가 문제가 되어 2003년 11월 회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CEO와 CFO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또는 유가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서류에 직접 확인, 검토했다는 사실과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전에 회사에서 결산 과정이 종료되고 내부적인 보고 절차에 따라 최초 제시 재무제표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감사기준적용지침』에서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감사가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과 제시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기업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재무제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의 6주전에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내부감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4주내에 이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회사 내부의 재무제표 확정 과정을 거친 후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제시되고 외부감사인은 제시된 재무제표를 상대로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을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업무가 종료되면 정기주주총회일 7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사에는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상기의 재무제표 확정 및 외부감사의 절차와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회사의 이사회에서의 재무제표 최초 확정시기

는 1월말 이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경우 영업실적 등에 대한 최초 공시시기를 개관한 결과 통상적으로 1월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현장 감사가 종료 되는 감사철회일(감사보고서일) 이후에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손성규·이은철의 연구(2008)에서도 회사의 잠정이익과 실제이익이 일치하는 경우가 전체 표본의 77.7%를 차지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회사가 나름대로의 재무제표 확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기업의 재무제표 최초 작성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영업실적 공시 시점 또는 이사회와 재무제표 승인일을 기업의 최초 재무제표 확정 시점으로 간주하고, 이 시기를 외부감사인의 감사종료일 및 정기주주총회 일자등과 비교하여 관련 법규에서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조되지 않고서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대한 현황 및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II장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과정에 대해 개관하고, III장에서는 재무제표 공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IV장에서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작성 절차에 대한 이사회 및 내부감사의 승인일, 외부감사 시작일, 영업실적 공시일 등을 상호 비교 분석한 후, V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II.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

1.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 개관¹⁾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법규는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외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을 들 수 있다.

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회의일의 6주간전에 동 재무제표를 회사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3) 회사의 감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방법의 개요, 재무제표의 법령 준수 여부, 재산 및 손익상태의 정확한 표시 여부, 회계방침

1) 여기서는 개별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제도만을 개관한다.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무제표감사와 이행감사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447조의4) 그러나 상법에서는 이사 또는 감사가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후적인 처벌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이는 선언적인 성격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고, 정기주주총회회의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등본은 지점에 3년간 비치한다.(상법 제448조, 제449조) 이사와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50조)

한편,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이상인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바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실시 후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감법 제7조, 제8조)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외감법 제16조제2항),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감법 제20조제4항)²⁾ 또한, 외감법 적용대상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다.(외감법 제14조)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 등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포함되기 때문에 동 제도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장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담당 이사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토 후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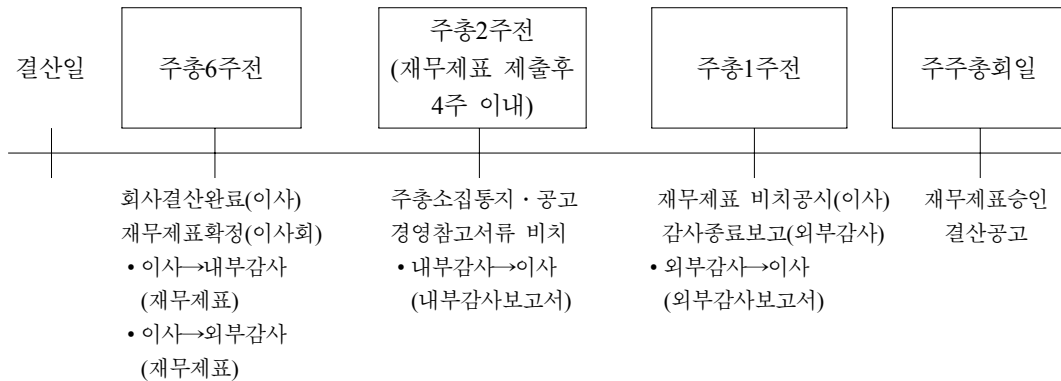
본 연구의 표본인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기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일정을 가장 늦게 적용할 경우 각각의 제출 기한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회사의 이사는 2월 17일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의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 내부감사는 3월 17일까지, 외부감사인은 3월 24일까지 외부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³⁾

-
- 2) 그러나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정기총회 6주일전)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는 매우 확인하기 어려우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동 벌칙 조항은 선언적인 성격으로 판단된다.
 - 3)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에서는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감사가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회사는 3월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를 승인받고 사업보고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공시한다.

〈그림 1〉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 가이드라인(2006.10) p.188

2. 공시 관련 제도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소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공시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충분하게,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full, timely and fair disclosure)하고,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어야 비로소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시장의 실패가 최소화되며, 투자자가 신뢰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나누어지며, 이 중 유통시장공시는 또다시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 제출은 대표적인 정기공시의 일환이며,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사업보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여지가 있다. 이는 회사의 감사는 재무제표감사에 한정하지 않고 이행감사와 같은 폭넓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선후 관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고서의 기재사항으로는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감사인의 감사의견,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기업결합집단재무제표, 전문가의 확인, 영업보고서, 정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등을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동 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확인,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기업의 정기보고서 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금융위의 행정조치(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 해임 권고, 검찰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경고 또는 주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⁴⁾

상장법인이 공시의무 대상이 아닌 중요정보 또는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중요정보를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공시 관행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행위 유발 등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는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장래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잠정 영업실적, 중요경영사항 등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정보 제공전까지)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에서 전망,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면책조항(safe harbor)을 적용하여, 사후에 실제치가 공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공시반복 또는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기업의 예측, 전망 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 넓은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외국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제도

미국의 경우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에 의하면 회사는 주주들에게 연차 재무제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재무제표의 종류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연차 재무제표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담당 책임자(대표)는 재무제표가 GAAP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차 재무제표는 각 사업연

4)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건수를 보면 172건, 124건, 68건, 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의 조치만을 살펴보면 과징금 48건, 과태료 2건, 검찰고발 11건, 경고 및 주의 2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종료후 120일 이내에 주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MBCA §16.20(c)), 각주의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과 4월 1일 사이에 보고되어야 한다.(MBCA§16.21(c))⁵⁾

미국의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제도는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SEC가 회계공시제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발행시장 규제인 1933증권법과 유통시장 규제인 1934증권거래법을 기초로 신고 양식과 기재 내용을 정하고 있다. SEC에 의한 계속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대별된다. 정기공시는 연차보고서(양식 10-K), 분기보고서(양식 10-Q)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시공시는 임시보고서(양식 8-K)와 거래소에 의한 적시공시가 대표적이다. 연차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분기보고서는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SEC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 양식, 내용 등은 Regulation S-X에서 다루고 있으며, 비재무정보에 대해서는 Regulation S-K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임시보고서는 지배권의 변화, 중요 재산의 이전, 도산 절차의 공시 등과 같은 회사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5일 또는 15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증권거래법의 정기공시 의무사항 이외에 거래소나 전미증권협회에서는 합병, 공개매수, 신제품 개발, 경영권 변동, 자사주 취득계획 등의 중요정보의 적시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시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기업이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한 중요 미공개정보를 일반인에게도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 공시의무의 대상도 찾아볼 수 있다.

유통시장에서의 공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행정조치에 의존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내용심사를 통한 SEC의 정정 요구이외에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추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연차보고서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표시에 대해 100만 달러(법인은 250만 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기 공시에 서의 부실표시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신뢰하여 해당 표시에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증권 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신뢰에 의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시공시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Rule 10b-5에서의 포괄적 사기 방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회사법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식회사는 매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기타 회사의 재산과 손익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와 사업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435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감사역(監査役, 내부감사에 해당) 또는 감사위원회와 회계감사인(會計監査人, 외부감사에 해당)이 감사를 수행하며, 사업보고서 및 부속명세서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받은 재무제표 등은 이사회(取締役會)의 승인을 받는다.(일본 회사법 제436조)⁶⁾ 이사회설치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시 이사

5) 미국의 경우 회사의 모든 권한은 주주들의 합의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의해 행사되며, 배당과 같은 주주들에 대한 분배 등도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법처럼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승인,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재무제표 작성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를 포함)를 제공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출된 재무제표를 승인하여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438조) 그러나 외부감사인인 있는 회사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가 관련 법규와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승인은 요하지 않으며 이사의 재무제표 내용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439조) 이는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만 보장된다면 정기주주총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최종재무제표의 확정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전반적인 공시제도는 상법상의 공시제도와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로 나누어져 왔다. 상법상의 공시제도는 기업의 활동과 그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주주,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제도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대별되고, 정기공시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와 반기보고서로, 수시공시는 임시보고서와 적시공시로 이루어진다. 2007년 일본 증권거래법의 개정형식을 가진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이 제정되면서 상장회사 공시에 관한 몇 가지 개선이 강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유가증권보고서에 관한 확인서의 제출, ② 내부통제보고서의 제출, ③ 분기보고서 제도의 도입 등이다. ①은 지금까지는 임의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서의 작성·제출 주체는 대표자가 아니고 발행회사 자신이다. ②는 ①에서 요구하는 확인의 전제가 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경영자가 평가한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당해 보고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③은 현재 거래소의 자율규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기보고를 법제화하여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일본의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보고서와 같은 계속 공시 서류에 대해 재무성 장관은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에 정정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 허위의 정보개시에 관한 민·형사의 책임 제도를 정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공시서류 미제출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법인의 경우 3억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법인의 경우 5억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회사의 임원 및 감사증명을 한 감사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는 표시가 부실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미국과 일본의 재무제표 작성 및 승인 제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 6) 일본에서는 이사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주식회사는 공개회사, 감사역회설치회사, 위원회설치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기업 내부에서의 작성 또는 감사 기한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재무제표 최종 승인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물론 일본의 경우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점은 구체적인 작성 또는 감사 기한을 두고 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최종 승인하는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점으로서 향후 제도 개선의 여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사후적으로도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작성 기한 등의 명시와 같은 형식적인 규정이 과연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적시성 제고 및 책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재무제표 공시제도에 대한 연구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역할로서 회계정보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치 관련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계정보의 공시는 기업과 기업의 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시키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다. 공시제도를 강제적 공시와 자발적 공시로 구분할 때 재무제표 공시는 당연히 강제적 공시 사항에 포함된다. 강제적 공시 영역은 자발적 공시 영역에 비해 그동안 제도적인 규제 또는 보완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제 공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는 그 작성 주체인 기업이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인 2차적 책임을 진다.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의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이해관계자의 투자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장에 공개된 회계정보는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수반하면서 다수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정보의 활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 또는 법적 소송 등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 논란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회계감사의 책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일련의 절차에 대한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법규의 실질적인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은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의 공시제도에 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기존 연구 중 회사의 재무제표 공시 행태의 비교 분석 또는 공시 시기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관심사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최현돌(2002)은 재무제표의 본문을 통한 공시와 주식 사향을 통한 공시 중 어느 쪽이 세분화

되어 있는지를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시 상장하고 있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재무제표본문 공시가 미국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으며 반대로 미국은 주석을 통한 공시가 세분화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주석 공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는 자산영역 관련 주석이 많고 미국은 손익계산서 관련 주석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제표를 통한 회계정보의 제공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⁷⁾

박연희(2007)는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를 지연시키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익 감소와 손실을 보고할 경우, 계속감사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비적정감사의견이 표시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공시가 지연되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무제표 공시 지연을 나타내는 변수로 결산일로부터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일의 차이, 직전 연도 공시일과 당해 연도 공시일의 차이, 결산일과 감사보고서일의 차이 등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러한 측정치가 실질적인 재무제표 공시일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⁸⁾ 김문태와 고대영(2007)은 회사의 이익 관리가 재무제표 공시시기를 지연시키는 지 실증분석 하였다. 재무제표의 보고시기가 지연되는 기업의 재무적 발생액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재무제표의 보고시기를 주총소집 공고일로 측정함에 따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공시 시기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공시와 외부감사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를 위한 대상 기간은 과거 2005년 재무제표부터 2008년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시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교분석한다. 연구의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II장에서 살펴본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결의 또는 발표 일자 등이다. 이러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출처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다.

- ① 이사회 개최일자 및 의안내용,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개최일자 및 의안내용⁹⁾

7) 또한 DART를 통해 공시되는 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의 형태를 개관하여 보면 외부감사인인 어느 회계법인인가에 의해 그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에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8) 상법에 의하면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자에 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되지는 않고 있다.

9)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에서 이사회 등의 개최일자 및 그 의안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자료는 2000년말부터 확인가능하다.

- ② 정기주주총회 일자¹⁰⁾
- ③ 기업의 영업실적 발표 시기¹¹⁾
- ④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시작일자와 종료일자¹²⁾
- 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자¹³⁾

IV. 재무제표 작성 및 확정 절차에 대한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으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비금융업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선정하였다.¹⁴⁾ 각 연도별로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가 모두 추출되지 않는 표본 수를 제외하고 총 6,075건의 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전체 표본에 대한 현황은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 표본 구성

구분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주권상장	607	602	620	630	2,459
코스닥상장	833	896	933	954	3,616
합 계	1,440	1,498	1,553	1,584	6,075

1. 이사회 일자의 현황

가. 이사회 개최일자와 회계연도말의 차이 현황

회계연도말이 종료되면 회사의 회계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과거의 수작업에 의한 결산이 전산시스템으로 많은 부분이 대체되면서 회사의 결산 과정은 점점 단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회사의 결산재무제표의 작성은 동 정보가 자

10)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주주총회의사록 요약에서 일자를 확인가능하다.

11) 2002년 11월 1일부터 공정공시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이 공시하는 잠정 영업실적을 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사업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3) 2006년 1월 결산법인부터 DART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14) 2005년 6월말 법인부터 자료를 추출함에 따라 2005년 6월말 내지 11월말 법인은 2005년 표본에 포함시켰다.

본시장에 공시되기 위한 일련의 필수적인 절차를 가져오는 최초의 사건이 됨은 물론이다. <표 2>와 <그림 2>에서는 회계연도말 이후 최초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이사회에서 승인, 결의되는 일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표본수 6,075기업 중 약 14%에 해당하는 837개의 기업은 재무제표의 승인, 결의내용이 이사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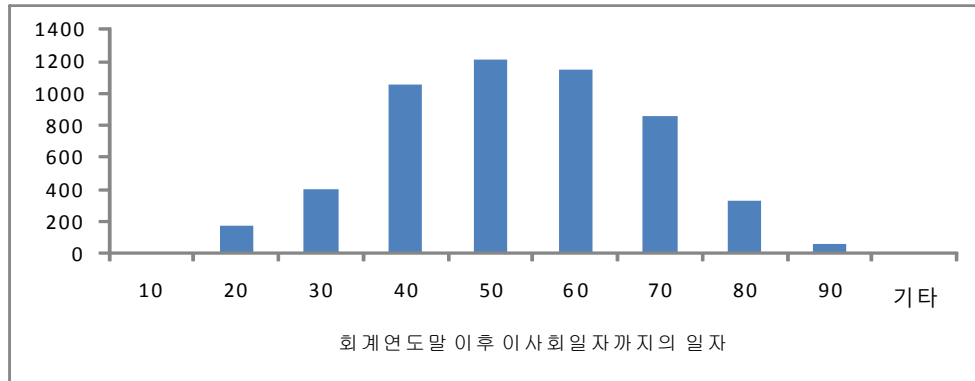
이는 물론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기업의 근원적인 책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회의 의결 내용으로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에서 주로 발견되는 예를 든다면 중요자산의 처분, 회사채 발행, 지급보증, 신규투자 결정, 제규정의 제·개정, 정기총회 소집의결 등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연도가 종료하고 해당 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것은 자본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출발점으로서 이 역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물론 모든 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이 각 기업의 회계담당부서에서의 작업이라는 편협한 의식에서 벗어나 회사의 대표기관인 이사회의 기본 업무에 포함됨을 재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제1차적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2005년 이후 4개년에 걸쳐 살펴본 결과 이사회 결의가 없는 기업의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표 2> 회계연도말 이후 이사회일자까지의 일자 분포

구 분	이사회 결의 여부		이사회일자까지의 일자							ANOVA F비율 (p값)
	이사회결의 없는 기업수	이사회결의 있는 기업수	평균	최 소 값	1사분 위수	중위수	3사분 위수	최 대 값	표준 편차	
전체표본	837(13.8%)	5,238	48.42	4	37	47	59	90	14.94	3.29 (<.0001)
2008년	194(12.2%)	1,390	49.85	6	40	50	61	90	14.73	
2007년	125(8.0%)	1,428	49.28	4	36	50	60	88	15.51	
2006년	215(14.4%)	1,283	46.75	9	38	45	58	88	14.43	
2005년	303(21.0%)	1,137	47.50	11	38	47	58	88	14.80	
상장	454(19.0%)	1,933	42.39	7	32	41	53	86	14.66	194.38 (<.0001)
상장관리	17(23.6%)	55	52.96	15	41	53	67	87	15.77	
코스닥	346(10.1%)	3,092	51.64	4	42	52	63	90	13.82	
코스닥관리	20(11.2%)	158	57.72	15	45	60	71	87	14.41	

〈그림 2〉 회계연도말 이후 이사회 결산승인일까지의 일자 분포



또한 관리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보다 재무제표의 이사회 결의를 발견할 수 없는 비중이 높다.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내부통제제도의 미흡 등이 그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절차에 대한 지원 인력이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보다 이사회 결의가 없는 기업수가 약 2배정도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벤처 또는 IT산업으로 대변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보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많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회계정보의 산출 출발 단계에서 의외로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에서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도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회계연도말 이후 이사회 결의 일까지의 기간을 보면 평균 1.5개월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2월 중순정도에 재무제표 결산작업이 완료됨을 보인다. 이는 회계법인의 기말 외부감사가 2월과 3월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어느 정도 설명한다고 보인다. 특이한 것은 결산완료의 최소기간과 최대기간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즉, 가장 짧은 결산기간을 보이는 회사는 4일만에 비해,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인 회계연도말 이후 90일이 되는 날에 결산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기업도 보이고 있다. 사분위수 자료를 보면 결산 업무가 37일 이내에 완료되는 기업과 59일 이상이 소요되는 기업이 각각 25%를 차지한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결산기간이 10일 이내인 회사가 7개(0.1%), 20일 이내인 회사는 163개(2.7%), 30일 이내인 회사는 522개(8.6%)이며, 반대로 60일 이상인 회사는 1,234개(20.3%)에 달한다. 또한 관리종목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약간 결산기간이 길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관리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특성이 결산 기간을 좀 더 필요로 함을 추측하게 한다.

나. 정기주주총회일과 이사회 일자의 차이 현황

상법과 외감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일전 6주간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의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연 그동안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이러한 관련법규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찰한 결과가 <표 3>에 요약되어 있으며, <그림 3>에서는 이에 대한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표시하였다. 평균적으로 31일(즉, 약 4주)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75%에 해당하는 3사분위수도 43일로서, 이는 대체로 상법상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표본기업 중 27.5%에 해당하는 1,439개 기업만이 6주(42일)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상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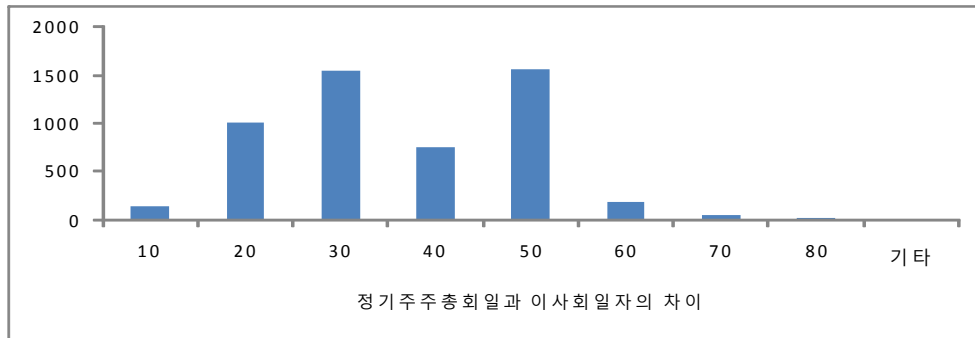
특히 정기주주총회일자와 이사회일자 차이의 최소값을 보면 1일에서부터 13일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박하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최종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신경을 기울이고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최초 재무제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표 3> 정기주주총회일과 이사회 일자의 차이 분포

구 분	기업수	평균	최소값	1사분위수	중위수	3사분위수	최대값	6주(42일) 이상 차이	표준편차	ANOVA F비율 (p값)
전체 표본	5,238	31.46	1	21	30	43	78	1,439(27.5%)	12.70	2.91 (<.0001)
2008년	1,390	31.19	7	21	30	43	66	368(26.5%)	12.53	
2007년	1,428	30.96	3	21	29	43	74	388(27.2%)	13.62	
2006년	1,283	32.27	1	22	31	43	78	369(28.8%)	11.90	
2005년	1,137	31.51	2	21	30	43	70	314(27.6%)	12.53	
상장	1,933	34.56	2	23	36	44	73	781(40.4%)	12.86	67.13 (<.0001)
상장관리	55	29.60	3	18	27	43	73	14(25.5%)	13.46	
코스닥	3,092	29.82	13	20	28	42	78	618(20.0%)	12.19	
코스닥관리	158	26.30	1	16	22.5	36	60	26(16.5%)	12.48	

15) 실제 관측치에서는 73개 표본이 정기주주총회일자와 이사회결의일자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자료는 본 절에서의 설명에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외하였다.

〈그림 3〉 정기주주총회일과 이사회일의 차이 분포



최소값의 분포를 시장별로 보면 4.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2일)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13일)보다 상법 규정의 준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주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람직한 기업의 수를 시장별로 관측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0%가 넘는 기업(781개 기업)이 상법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보다 양호한 상태를 보인다. 또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한 관련 법규의 준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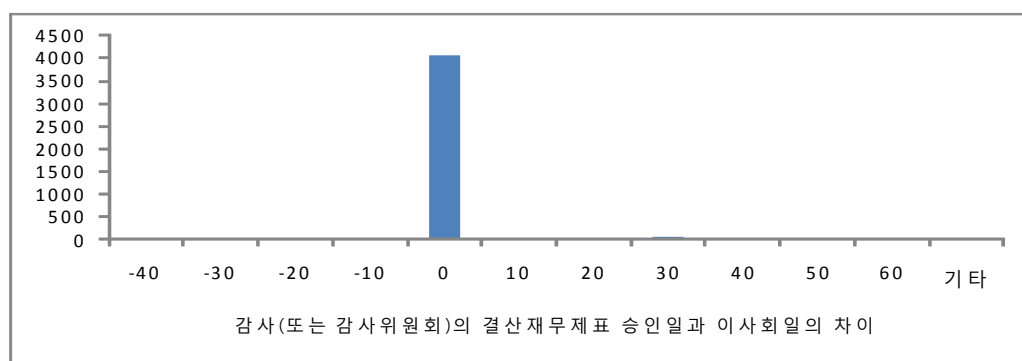
2.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일과 이사회일의 차이 현황

<표 4>와 <그림 4>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의결일이 있는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승인된 재무제표에 대해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승인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사회의 재무제표 의결이 있었던 총 5,238개 기업 중 81.2%에 해당하는 4,254개 기업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의결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면서 재무제표 확정 절차에서 내부감사의 역할이 제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보이다가 2008년에는 다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관리종목에 속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정상 기업에 비해 내부 감사의 재무제표 승인 비율이 낮으며(특히 코스닥 관리업종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 기관의 업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결산재무제표 승인일과 이사회일의 차이 분포

구 분	이사회 승인 기업수	감사 승인 기업수	평균	최 소 값	1사분 위수	중 위 수	3사분 위수	최 대 값	4주이내 차이	차이 = 0	표준 편차	ANOVA F비율 (p값)
전체 표본	5,238	4,254 (81.2%)	0.67	-44	0	0	0	60	4,125 (97.0%)	3,990	5.11	
2008년	1,390	1,136 (81.7%)	0.99	-32	0	0	0	51	1,092 (96.1%)	1,038	5.82	0.87 (0.6450)
2007년	1,428	1,264 (88.5%)	0.50	-32	0	0	0	60	1,236 (97.8%)	1,216	4.91	
2006년	1,283	1,047 (81.6%)	0.80	-44	0	0	0	53	1,001 (95.6%)	951	5.82	
2005년	1,137	807 (71.0%)	0.28	-7	0	0	0	32	796 (98.6%)	785	2.77	
상장	1,933	1,691 (87.5%)	1.06	-44	0	0	0	53	1,623 (96.0%)	1,547	6.04	5.67 (0.0007)
상장 관리	55	45 (81.8%)	0	0	0	0	0	0	45 (100.0%)	45	0	
코스닥	3,092	2,412 (78.0%)	0.42	-32	0	0	0	60	2,351 (97.5%)	2,294	4.47	
코스닥 관리	158	106 (67.1%)	0.25	0	0	0	0	23	106 (100.0%)	104	2.26	

〈그림 4〉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결산재무제표 승인일과 이사회일의 차이 분포



한편,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감사에 제출한 이후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상법상의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일과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일의 차이가 4주 이내에 속하는 기업수를 보면 전체 4,125개 기업(97%에 해당)이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견 재무제표 확정에 있어서의 내부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상법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1사분위수, 중위수, 3사분위수 모두가 0을 보이고 있는 분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사회와 재무제표 승인일과 감사의 재무제표 승인일이 일치하는(즉, 두 의결일의 차이가 0인 경우) 기업이 3,990개 기업에 달한다. 보통 이사회에서 최초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면 감사는 내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며칠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표에서의 자료처럼 이사회승인일과 감사의 승인일이 일치한다는 것은 내부감사 업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차이가 0인 표본을 제외하고 나면 상법상의 ‘4주 이내’ 규정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 135개 기업으로 3.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표본 5,238개 기업 중 2.6%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재무제표 확정절차에 있어서는 내부감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사회 승인일보다 감사 승인일이 늦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면 감사승인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최소값이 0보다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부 기업은 감사의 승인일이 이사회 승인일보다 빠르다는 것을 암시한다.¹⁶⁾ 이는 기업에서 최초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에 있어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가 최초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내부 감사 및 외부감사에 제출하면서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산출되어 가겠지만 각 단계에 있어 해당 주체(이사회, 내부감사, 외부감사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절차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형식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외부감사 시작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최초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이사회가 회계연도 종료후 1.5개월 정도에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법상의 요구 사항인 정기주주총회 전 6주간 전에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기업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게 제공되는 최초 재무제표가 이사회 승인을 얻은 공식적인 재무제표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기업 입장에서 공식적인 재무제표라고 할 수 없다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⁷⁾

16) 구체적으로 전체 표본 중 96개 기업(2.3%)이 감사 승인일이 이사회 승인일보다 빠르다.

17)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회계감사의 대상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이에 대한 회계감사 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해져 자기 감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의 양식이 회사의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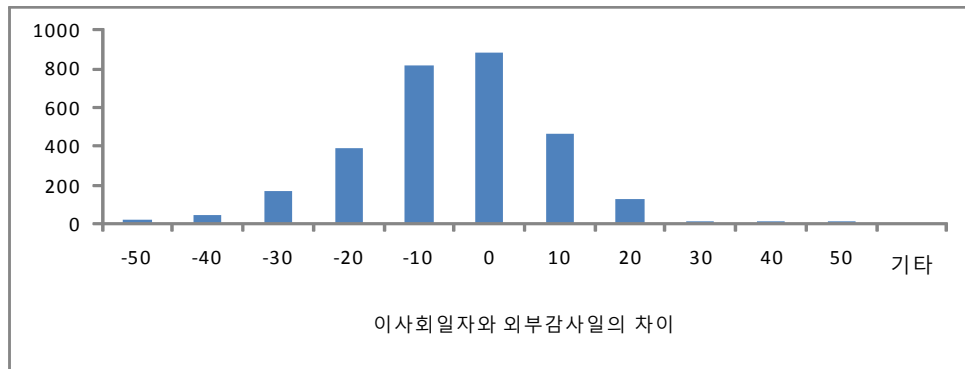
<표 5>와 <그림 5>는 재무제표에 대한 최초 이사회 승인 일자와 외부감사 시작일의 차이 분포이다.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외부감사 일정이 공시된 회사를 전체 표본으로 하였으며 그 전체 표본수는 2,929개 기업이다. 전체 표본에 대한 외부감사 시작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일수의 평균은 약 -10일로서 이는 평균적으로 외부감사 시작일이 이사회 승인일보다 앞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연도별, 시장구분별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현장에 이루어지는 기말 외부감사기간은 피감사대상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4 내지 5일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회사가 외부감사가 종료되고 감사인의 수정의견이 반영된 후의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75%에 해당하는 3사분위수도 모든 경우에 0보다 작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차이일수가 음수(-)값을 갖는 표본수(즉, 외부감사일이 이사회 승인일보다 앞서는 표본수)는 전체 표본의 74.4%인 2,180개 기업이다. 4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외부감사 이전에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업이 재무제표의 제1차적 작성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장구분별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보다 이사회 승인일이 외부감사일보다 늦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전문 회계인력의 부족과 회계시스템의 상대적 취약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외부감사일과 이사회일의 차이(외부감사시작일-이사회일) 분포

구 분	기업수	평균	최소값	1사분위수	중위수	3사분위수	최대값	이사회일이 외부감사일보다 늦은 기업수	표준편차	ANOVA F비율 (p값)
전체표본	2,929	-9.99	-59	-17	-9	0	44	2,180(74.4%)	13.14	
2008년	692	-10.86	-56	-18	-10	-1	20	531(76.7%)	12.47	2.76 (<.0001)
2007년	740	-10.98	-53	-19	-11	-1	39	563(76.1%)	14.04	
2006년	761	-8.28	-52	-16	-8	0	44	542(71.2%)	12.33	
2005년	736	-9.97	-59	-17	-9	0	31	544(73.9%)	13.49	
상장	1,346	-9.27	-59	-17	-8	0	39	924(68.6%)	13.59	3.69 (0.0115)
상장관리	30	-10.47	-30	-23	-10.5	0	27	21(70%)	13.56	
코스닥	1,499	-10.50	-56	-17	-10	-3	44	1,194(79.7%)	12.53	
코스닥관리	54	-13.85	-50	-27	-14	-2	21	41(75.9%)	16.79	

감사인에 따라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외부감사인의 영향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림 5〉 외부감사일과 이사회일의 차이(외부감사시작일-이사회일) 분포



외부감사인인 기말감사에 투입되면서 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시받고 제시된 재무제표를 감사조서에 최초 재무제표로 첨부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입증감사업무가 진행되는 형식을 본다면 문제점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기관인 이사회 승인이 없는 회계부서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최초 재무제표로 간주하고 시작되는 회계감사는 잠재적 부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러한 관행 하에서 회계감사 중 중대한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동 이슈사항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인 수정을 제시하고 이를 회사가 받아들여 최종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중대한 이슈 사항에 대한 최초의 장부기록이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회계감사는 최종 재무제표를 작성, 공표하기 위한 보조작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¹⁸⁾ 또한 향후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감사인의 책임 구분이 불명확해지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회사와 감사인이 서로 공모하여 분식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기사는 결국 재무제표의 작성에 회계법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감사인의 독립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표 5>는 이러한 우려를 지원하는 자료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에 있어서 외관상 독립성 유지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회계감사에 있어 정신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외관상 독립성을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비록 정신적 독립성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신적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이창우 외, 2002) 회계감사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결국 외부감사인에 최초로 제시되는 재무제표가 회사의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작성되는 기업의 언어(language of business)

18) 실제로 기업의 최초 재무제표가 부실하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시 수정사항이 많은 경우 기업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적절한 외부감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함을 간과할 수 없다.

여야만 할 것이며 따라서 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기관(즉,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여야 할 것이다.

4. 외부감사 시작일 또는 이사회 승인일과 영업실적 공시일의 차이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대부분이 결산 재무제표 작성절차에 있어서 이사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는 최초 재무제표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문제가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또는 감사의 승인 절차만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실적 공시일과 이사회승인일, 영업실적 공시일과 외부감사시작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영업실적 공시는 공정공시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외부이용자에게 공시하는 자료이므로 최소한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통과한 이후에 공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즉, 비록 이사회 결의는 없었지만 영업실적이 외부감사 시작 이전에 외부에 공시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기 이전에 중요 회계 이슈에 대해서는 한 번 논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업실적 공시일과의 관계는 <표 6>에 요약하였으며 그 분포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표 6>의 패널 A에서는 영업실적공시일과 외부감사일과의 차이를, 패널 B에서는 영업실적 공시일과 이사회의 재무제표 최초 승인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본기간 중 영업실적 공시를 한 기업은 총 916개 기업이다. 이 중 333개 기업은 외부감사일이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패널 A에서의 대상 표본은 583개 기업이다. 또한 이사회 의결이 없는 기업이 102개로서 패널 B에서의 대상 표본은 814개 기업이다.

패널 A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영업실적 공시일이 외부감사일보다 약 6일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말 외부감사가 약 4 내지 5일이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감사종료일 이후에 영업실적 공시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²⁰⁾ 구체적으로는 70.2%에 해당하는 409개 기업이 영업실적 공시일이 외부감사일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상장기업들이 공정공시의 일환으로 보고하는 영업실적 공시에 있어서 외부감사인의 기말 현장감사가 완료된 이후에 공시한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도별로 감소추세를 보인다고도 할 수 없다. 실제로

19)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의무와는 별도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 공시하여야 한다.

20) 이를 외부감사 종료일(감사현장 철수일)과 영업실적 공시일의 차이로 살펴보면 평균 0.81일만큼 영업실적공시일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부감사인이 현장에서 철수한 다음 날 정도에 영업실적 공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008년도에는 그 이전 연도보다 영업실적 공시일이 외부감사일보다 늦어짐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벌어지는 회계처리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추세가 강화됨을 추정케 한다. 시장구분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보다 영업실적 공시를 뒤로 미루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영업실적 공시에 있어 보다 신중한 모습을 취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시의 신중성을 떠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책임을 외부감사인에게 미루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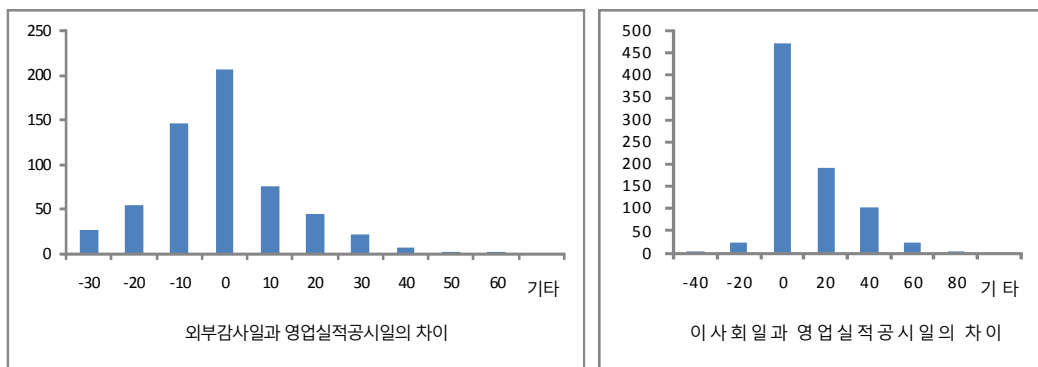
〈표 6〉 영업실적 공시일과의 관계

패널 A. 외부감사일과 영업실적 공시일의 차이(외부감사시작일-영업실적 공시일) 분포										
구 분	기업수	평균	최소값	1사분위수	중위수	3사분위수	최대값	영업실적 공시일이 외부감사일보다 늦은 기업수	표준편차	ANOVA F비율 (p값)
전체표본	583	-5.57	-39	-15	-7	2	55	409(70.2%)	14.28	
2008년	113	-9.14	-39	-17	-9	-3	34	91(80.5%)	13.28	3.13 (0.0253)
2007년	148	-4.86	-39	-14	-6.5	3	55	97(65.5%)	15.13	
2006년	154	-5.23	-37	-14	-7	2	27	108(70.1%)	11.98	
2005년	168	-4.11	-37	-14	-7	4	51	113(67.3%)	15.76	
상장	337	-7.10	-39	-15	-8	0	36	245(72.7%)	12.80	467
코스닥	240	-3.48	-39	-13.5	-7	5.5	55	160(66.7%)	15.71	(0.0097)
패널 B. 이사회일과 영업실적 공시일의 차이(이사회 승인일-영업실적 공시일) 분포										
구 분	기업수	평균	최소값	1사분위수	중위수	3사분위수	최대값	영업실적 공시일이 이사회일보다 같거나 늦은 기업수	표준편차	ANOVA F비율 (p값)
전체표본	814	5.75	-41	0	0	12	70	494(60.7%)	14.11	
2008년	173	4.27	-41	0	0	6	47	120(69.4%)	13.42	1.70 (0.1665)
2007년	233	7.34	-33	0	0	17	56	125(53.6%)	15.02	
2006년	210	5.32	-28	0	0	12	50	126(60.0%)	12.89	
2005년	198	5.65	-39	0	0	11	70	123(62.1%)	14.73	
상장	381	2.44	-41	0	0	1	56	277(72.7%)	12.09	14.33
코스닥	423	8.79	-39	0	0	18	70	213(50.4%)	15.19	(<.0001)

이와 같이 영업실적 공시 수치가 외부감사가 일단락된 이후의 수치라고 한다면, 영업실적 공시자료에서의 당기순이익을 잠정이익으로 보고 확정재무제표에서의 당기순이익을 실제이익으로 사용하는 관련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²¹⁾

패널 B에서는 영업실적 공시일과 이사회에서의 재무제표 최초 승인일의 차이 분포를 요약하였다. 평균적으로 이사회에서의 재무제표 최초 승인이 영업실적 공시보다 약 6일 늦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보다 그 차이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사분위수 및 중위수가 0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기업이 이사회 승인일과 영업실적 공시일이 같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²²⁾ 이는 영업실적 공시일이 이사회에서의 재무제표 최초 승인일보다 같거나 늦은 경우가 60.7%에 해당하는 494개 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72.7%)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50.4%)보다 영업실적 공시를 이사회 승인일 이후로 하고 있는 기업이 약 50% 더 많음을 보여 준다. 보통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매출액, 당기순이익과 같은 영업실적의 공시는 그 이전에 이사회에서의 승인 결의가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만약에 그 순서가 뒤집어진다면 시장에 공시되는 영업실적 공시 자료의 신빙성에 심한 타격을 입힐 것이며 향후 확정될 영업실적과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보다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영업실적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감독기관의 현실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림 6〉 외부감사일/이사회일과 영업실적 공시일과의 차이 분포



패널 A와 B에서의 결과를 종합한다면,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각 단계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앞 절에서의 결론(즉,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대한 회사와 외부감사인간의 경계 불분명)을 보다 충실화하고 있다.

21) 잠정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를 가지고 감사인의 역할을 논의하는 연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잠정이익의 발표 시점 이후에 외부감사가 이루어져야 타당한 연구가 될 것이다.

22) 실제로 이사회 승인일과 영업실적 공시일이 같은 표본수는 전체 366개로서 45%에 해당한다.

5. 상관관계 분석

지금까지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의 각 단계가 상법 등의 관련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회사의 제1차적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단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에 추가적으로 각 회사의 특성이 이러한 이행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개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회사의 특성 변수로는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특성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관심변수로는 이사회 승인일과 회계연도말의 차이, 주주총회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감사의 승인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이사회 승인일과 외부감사일의 차이, 영업실적 공시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영업실적 공시일과 외부감사일의 차이 등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회사의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많을수록 이사회 승인일과 회계연도말의 차이 기간이 짧아짐을 유의한 수준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규모가 크거나, 회사의 실적이 좋을수록 결산 시기가 단축됨을 보여준다. 회사의 시스템과 인력구성이 결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며, 좋은 회계정보를 외부에 빨리 공표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결산 시기가 빨라지며 이는 외국인 주주가 많다는 것은 그 회사의 규모 등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²³⁾ 주주총회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기간도 대부분의 회사 특성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역시 회사 특성이 양호한 회사는 결산작업이 비교적 일찍 종료됨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주총회 일자가 2월말 또는 3월에 집중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주주총회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기간이 대주주지분율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 영향을 받아 재무제표의 확정일 빨리 이루어짐을 보여준다.²⁴⁾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무제표의 확정에 있어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확정 절차를 개선하여 회계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 승인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기간은 당기순이익 또는 영업이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회사의 특성이 양호한 경우에 나름대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이후 내부감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²⁵⁾

23) 실제로 외국인지분율과 총자산, 매출액 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4) 실제로 대주주지분율은 주주총회일과 회계연도말의 차이 기간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25) 감사 승인일이 이사회 승인일과 같은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순위에 의한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기타 변수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상관관계 분석¹⁾

구 분	총자산 ²⁾	매출액 ²⁾	영업이익 ²⁾	순이익 ²⁾	외국인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
이사회 승인일과 회계연도말의 차이	-0.357*** -0.307***	-0.368*** -0.323***	-0.354*** -0.342***	-0.340*** -0.317***	-0.205*** -0.164***	-0.014 -0.006
주주총회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0.256*** 0.220***	0.257*** 0.230***	0.260*** 0.266***	0.236*** 0.235***	0.156*** 0.106***	-0.027* -0.037***
감사의 승인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	0.148*** 0.024	0.123*** 0.018	0.138*** 0.031*	0.146*** 0.040**	0.074*** 0.016	-0.028* -0.020
외부감사일과 이사회승인일의 차이	0.003 0.013	0.000 0.012	0.023 0.035*	0.006 0.017	-0.008 -0.020	-0.012 -0.019
이사회 승인일과 영업실적 공시일의 차이	-0.167*** -0.204***	-0.135*** -0.163***	-0.141*** -0.161***	-0.127*** -0.155***	-0.125*** -0.090**	-0.010 -0.004
외부감사일과 영업실적 공시일의 차이	-0.146*** -0.131***	-0.099** -0.072*	-0.111*** -0.102**	-0.078* -0.067	-0.105** -0.104**	-0.009 -0.005

1) 상단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하단은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표시함.

2) 각각의 자연대수 값을 사용

***, **, *는 1%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0% 유의수준

그러나 외부감사일과 이사회 승인일의 차이는 어떤 특성 변수와도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특성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시작전에 이사회가 최초 재무제표를 승인하려는 의지가 적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반면, 영업실적 공시일과 이사회 승인일 또는 외부감사일과의 차이 기간은 회사의 특성 변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회사의 특성이 비교적 양호한 경우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이후, 심지어는 외부감사 시작 이후에 영업실적의 공정공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공시제도가 기업의 중요 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증권시장을 통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영업실적이 좋을수록 공시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시의 시기가 외부감사일 이후로 미루어지는 것은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겠지만 기업이 자신의 경영실적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측면과는 괴리가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업무와 외부감사인간에 역할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최근 들어 사회적 현상 및 기업의 사업 환경도 복잡해지면서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서의 외부 회계감사 기능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회계감사의 수행에 있어 가장 조심하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일 것이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감사인이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의견을 표명할 때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훼손시키지 않는 내면적 자세를 말하는 정신적 독립성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독립성이라 할 수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들 중 하나가 자기검토위협에 의한 상황이 있다. 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회계감사 업무의 영역이 잘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기말 입증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에 방문하여 회계감사를 시작하는 경우 회사는 최초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작점으로 하여 감사업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최초 제시 재무제표가 회사의 자체 결산작업의 일단락을 가져오며 이러한 재무제표는 회사의 업무를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승인, 결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도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시기와 내부가사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고, 외감법에서는 이사회가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외부 회계감사가 이루어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절차에 있어 일련의 대표적 사건들이 상호 바림직한 시차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즉, 이사회의 재무제표 결산, 영업실적 예측치의 공시, 내부감사의 감사업무 수행, 외부감사 수행, 주주총회 개최 등을 대표적 사건으로 추출하였으며 각 사건들이 적절히 시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사의 내부감사는 그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상법상의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체 기업 중 13.8%의 기업은 재무제표 승인의 이사회가 없었으며,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이 있는 기업도 72.5%는 상법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회사의 내부감사가 실질적인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3.2%정도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기업 중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고 이에 대해 내부감사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부감사인인 기말 입증감사 실시전 회사가 최초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바, 이사회일이 외부감사 시작일보다 늦은 경우가 74.4%에 달하였다. 이는 재무제표의 제1차적 작성 책임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매우 박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잠재적인 감사실패의 위협 요소로 인정된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이에 대한 회계감사는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는 있으나, 외부 감사의 종료일 이후에야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감사인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회계업무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이 외관상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정공시의 일환으로 공시되는 영업실적 공시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영업실적 공시 이전에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이 있는 기업은 15.7%에 불과하고, 심지어 70.2%의 기업은 외부감사일보다 늦게 영업실적 공시가 이루어짐을 관찰하였다. 이는 적시성 있는 정보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실적 공시마저도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계정보의 산출에 있어 기업의 입장은 외부 감사인의 재무제표 확정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기업의 내부의 회계인력으로 충분히 재무제표 결산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져야만 보다 더 양질의 회계 정보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데 아직은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회계전문인력의 확충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2000년 이후 발생한 미국의 회계개혁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 또는 제정으로 나름대로 회계제도의 발전이 있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투명성의 달성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유지되어 온 관련 법규에서도 그 제도 운영상의 최선의 관심과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신제도의 정착을 기다리기 이전에 바람직한 회계시스템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계투명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²⁶⁾ 이는 재무담당이사과 최고경영자의 사업보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 서명 등이 요구되는 현 제도에서 이러한 제도도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잘 정착되도록 지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는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회사는 최초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감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입장에서의 감사의견 표명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DART공시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첨부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하여 복수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엄격히

26)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자리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영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되는 문제가 이슈화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한다면 외부감사인의 의무는 회사의 첨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감사보고서 공시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반감된다.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면서 재무제표가 첨부되는 공시양식으로 인해 마치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의 전자공시와 사업보고서 공시를 일원화하여 사업보고서내 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난과 재무제표 공시 란을 통합하여 공시의 과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재무제표 작성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현재 재무제표의 확정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있겠지만, 그동안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재무제표 확정 업무를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귀속시키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의미에서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의 확정이 이사회 고유 권한이 된다면 이사회와 외부감사인은 나름대로 각자의 최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존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들 수 있다. 회사의 손익에 대한 수시공시의 정보효과 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정공시된 이익 자료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확정되는 실제이익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공정공시에 의해 공시되는 이익추정치가 실제로는 외부감사인의 현장감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1차적인 검증을 받은 후의 자료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과거 연구의 기저가 흔들리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연관 분야의 연구 방향을 수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고 공개됨으로써 건전한 회계공시 실무를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회 및 내부감사의 주요 결의 내용에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점은 한계점으로 갖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의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접근하였으며, 이사회 개최 일자 등의 원시 자료에 의한 기본적 분석에 치중하고 세밀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지 못함을 한계점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인식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전 과정에서 이사회의 업무와 외부 감사인의 업무가 어떻게 잘 조화롭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정 기업의 사례 분석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연계성이 기업 가치 제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문태 · 고대영. 2007. “이익관리가 재무제표 공시 지연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감사연구 제46호 : 227 - 248
- 박연희. 2007. “재무제표 공시를 지연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 29 - 51
- 손성규 · 이은철. 2008. “경영자-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인 교체”. 회계와감사연구 제48호.
- 육근효. 1999. “국제적 조화를 위한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비교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35호 : 253 - 288.
- 이창우 · 박수근 · 전규안. 2002.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 253 - 274.
- 최현돌. 2002. “재무제표 공시 · 표시에 대한 한국 · 미국의 비교분석”. 회계저널 제11권 제3호 : 87 - 112.
- 금융감독원. 2006. 『기업공시실무 가이드라인』
- 금융감독원. 2006. 『기업공시제도와 사례(위반사례를 중심으로)』
- 금융감독원. 2010. 『기업공시실무안내』
- 한국증권연구원. 2001. “한미일 공시제도의 현황 및 비교”.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2002
- [http : //www.fsa.go.jp/en/index.html](http://www.fsa.go.jp/en/index.html)
- [http : //www.japaneselawtranslation.go.jp](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 일본 會社法,

A Study on the Fulfillment of Company's Obligation on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Jeong, Tae Beom*

—〈Abstract〉—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lies on the company. If there occurs confusion on this, auditor's independence would be in trouble. In this research, it was analyzed whether the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by board of directors, fair disclosure of business results, internal auditor's work, external audit, and stockholders' meeting proceed with adequate intervals.

Board's approval of financial statements and internal audit do rarely comply with Commercial law in Korea. 74% of the sample shows that the board approves financial statements and 70% makes a public disclosure of provisional business results after the external audit begins. This means there are still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in a company when the annual report is prepared.

Accounting transparency could be achieved by timely supervision on the management of regulation as well as by adding a new regulation. Current disclosure system of annual report and audit report is to be made up for each other to reinforce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when it prepares the financial statements.

〈Key words〉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ndependence of external auditor, Disclosure, Board of Directors, Internal auditor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